

인사 규정

제정 2021. 06. 09.

개정 2021. 12. 21.

개정 2023. 11. 23.

개정 2024. 02. 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양주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정관에 의하여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12. 21.)

제3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남양주시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 12. 21.)

1. 일반직 (신설 2021. 12. 21.)

2. 계약직 (신설 2021. 12. 21.)

② 일반직은 과장, 팀장, 대리, 주임, 담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2. 21.)

③ 계약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1.)

1. 전무, 사무국장 (신설 2021. 12. 21.)

2. 생활체육지도자(무기계약직) (신설 2021. 12. 21.)

④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전무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고용형태에 따라 일반직, 계약직으로 분류 구분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5. “임명”이라 함은 회장이 부여하는 직책이나 직위를 말한다.
6.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정직, 해임, 강임, 복직, 면직,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8.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9.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면직”이라 함은 본회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2.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①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회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37조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7조(임용권자) 회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채용,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8조 삭제 (2021. 12. 21.)

제3장 임 용

제9조(채용원칙) ① 직원은 업무수행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본회 발전을 위하여 충실히 근무 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 직원의 채용은 시험성적, 면접성적 등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단,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1.)

제10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자격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 할 수 있다.

1.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공개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임용예정 직위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본회 계약직 직원 중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4. 기타 본회 업무형편상 체육 및 자원봉사 등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한자를 특별임용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1호, 2호, 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3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신규채용제한연령) ①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연령은 20세 이상으로 한다.

② 제34조에 의한 정년을 초과한 자라 하더라도 계약직 직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24. 02. 02.)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 12. 21.)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 12. 21.)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신설 2021. 12. 21.)

제13조(임용) ①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경우 임용대상자 중 등록을 필한자에 한하여 임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은 구비서류를 최종 확인한 자에 한하며, 채용신체검사의 경우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수습임용) ① 일반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때
2. 본회의 정관 및 규정, 내규를 위반한 때 (개정 2021. 12. 21.)
3. 제12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24. 02. 02.)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5. 회장이 본회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15조(승진시기) 직원의 승진은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11. 23.)

제16조(승진기본원칙) ① 상위직 결원 시 보충은 본회소속 직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3배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사전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16조 제4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자에 대하여 근속승진 임용한다. 단, 승진후보자명부의 40%이상을 근속 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1명일 때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 11. 23., 개정 2024. 02. 02.)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팀을 구성하거나, 직제개정 등으로 팀을 구성 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직종별 직급 및 직위와 승진소요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특별승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체육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직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자

② 제1항의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승진 인원과 승진 요건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특별승진 및 승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11. 23.)

(개정 2024. 02. 02.)

제18조(신원보증) ①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신원보증은 채용후보자 등록으로 같음한다.

제19조(보수) 본회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직

제20조(보직) ①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직무대리) ①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 중인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상위 직급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공석 또는 부재 중인 때에는 차하위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보장된 업무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겸직) 회장은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동일 직종 및 동일 직급 내에서 겸직 시킬 수 있다.

제24조(공무원등의 파견) ① 회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근무자의 보수는 파견하는 기관에서 지급하고 본회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직원의 파견)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을 타 기관에 파견 할 수 있다.

1.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교육, 훈련 등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기타 업무수행에서 필요하다고 회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파견근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수행업무의 종료 등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신분보장

제26조(신분보장) 본회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휴직) 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본회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용 고용된 때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
 7. 기타 법률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본회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02. 02.)

1. 제27조제1항 제1호의 경우 1년 미만 (개정 2024. 02. 02.)

2. 제27조제1항 제2호의 경우 2년 이내 (개정 2024. 02. 02.)
3. 제27조제1항 제3호의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 (개정 2024. 02. 02.)
4. 제27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경우 3월 이내 (개정 2024. 02. 02.)
5. 제27조제1항 제5호의 경우 3년 이내 (개정 2024. 02. 02.)
6. 제27조제1항 제6호의 경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02. 02.)

② 제2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4. 02. 02.)

제29조(휴직자등의 결원보충) ① 회장은 직원이 1년 이상 파견 또는 휴직할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직종 및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또는 파견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직원결원에 대한 보충은 승진 또는 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제30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계류 중인 자는 징계 처분의 확정 및 당해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는 퇴직 할 수 없다.

(개정 2024. 02. 02.)

② 삭제 (2023. 11. 23)

제31조(직권면직) 본회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24. 02. 02.)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 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

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사람이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하였을 때 (개정 2024. 02. 02.)
6. 복직신청 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8.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이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9.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10.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 되었을 때
11. 1개월간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제32조(직위해제) 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 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12조 및 제34조 규정에 해당되는 때 (개정 2024. 02. 02.)
2. 사망한 때

제34조(정년 등) ① 일반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전무와 국장은 계약직으로 한다. 전무와 국장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계약직은 계약기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정년 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

제6장 근무평정

제35조(근무평정) ① 본회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상 별

제36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경기도, 남양주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회장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37조(표창장)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행실이 바르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본회 발전에 공로가 큰 자

제38조(추천과 심사) ① 각 국장은 소속직원이 제37조 규정에 해당한 때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24. 02. 02.)

-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23. 11. 23.)
-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9조(이중표창의 금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40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징계 한다.

- 1.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 한 때
-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본회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 한 때
-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제4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으로 구분하며 해임, 정직을 중징계라 하고,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제42조(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3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징계처분기간 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며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징계처분기간 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 1심의 심의결과 징계 처분한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 · 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 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본회직원외의 직장에 상근직 신분을 보유한 경우
8.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44조(징계절차) ① 회장은 직원이 제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2. 02.)

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징계처분 사유와 결과를 당해 직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45조(의견청취) ① 위원회가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6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결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

제47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반사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3년을, 금전 등 재정관련 위반사항은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8조(인사기록) ① 총무팀은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직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카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양식은 내규로 정한다.

제49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신설 2023.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신설 2024. 02.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21. 12. 21.)

[별표 2] (개정 2023. 11. 23.)

직원채용 자격기준

(제10조 관련)

직 위 (직급)	자 격 기 준
전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2. 시군구 체육회 및 상위단체 국장 5년 이상 경력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 8년 이상 경력자 4. 상장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10년 이상 경력자 5. 해당업무에 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
국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2. 시군구 체육회 및 상위단체 국장 2년 이상 경력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 5년 이상 경력자 4. 상장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70인 이상 기업체 7년 이상 경력자 5. 해당업무에 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
과장· 팀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 공무원 7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기관 3년 이상 경력자 3. 상장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체 5년 이상 경력자 4.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체육관련 근무) 5. 해당업무에 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
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기관 2년 이상 경력자 3. 상장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체 3년 이상 경력자 4.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체육관련 근무) 5. 해당업무에 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
주임· 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2.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체육 관련분야 전공자 우대)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체육관련 근무) 4. 해당업무에 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
지도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체육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2. 삭제 (2021. 12. 21.)

[별표 3] (개정 2023. 11. 23.)

직종별 직급 및 직위 승진 소요기간

(제15조 제3항)

직 종	직급 및 직위	승진소요 최저기간
일반직	과장	팀장에서 3년 6개월 이상
	팀장	대리에서 2년 이상
	대리	주임에서 2년 이상
	주임	담당에서 1년 6개월 이상